

SAMC | LAW REVISION

1. 20년 만에 「주세법」 체계 개편 「주류면허관리법」 별도 제정

정부가 주세 부과와 주류 행정규정이 섞여 있는 현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판매·면허 관련 사항을 별도 법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6일 「주세법」 전부 개정안, 「주류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조항을 분리해 「주류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 제정하기로 했다. 해당 법률에는 주류 제조와 판매, 유통 등 주류 행정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Read More](#)

2. 플라스틱 절연전선 및 직류전동기 긴급 항공운송 시 관세 감면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계를 위해 긴급 항공 운송 시 관세 부담을 낮춰주는 품목에 플라스틱 절연전선과 직류전동기를 추가했다고 3월 2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한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물품은 주로 자동차와 전자기에 사용되는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제8544.42- 2090호), 직류전동기(제8501.10-1000호)이며,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월 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Read More](#)

3. 세관장확인물품 '6,152개' 어린이제품 등 311개 품목 추가

수출입 신고자료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장확인물품이 기존 5,841개에서 6,152개로 늘었다. 생활화학제품, 위험한 기계·기구, 전기생활용품, 화학물질, 방사선 원료물질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품목의 세관장확인물품 신규 지정 요구 및 기존 세관장확인물품 제외·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결과다. 관세청은 4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CUSTOMS & TRADE TREND

1. 해외 거주 가족 및 친인척에게도 마스크 발송 가능

외국에 사는 며느리와 사위, 형제·자매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발송 가능 해외 거주 가족 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해 4월 9일부터 해외 발송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직계 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허용했는데, 4월 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및 형제·자매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Read More](#)

2. 석유 수입부과금 징수 '2개월 → 90일'로 유예

정부가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 수입부과금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을 2개월에서 90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와 함께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석유 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국내 석유업계에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Read More](#)

3. 미국, 수입 관세 90일간 납부 유예 결정

미국 정부가 수입 관세 납부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는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날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분쟁 끝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이나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들이 이 시간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FTA TREND

1.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인도와 말레이시아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인도정부의 봉쇄정책으로 인하여 인도 상공부 상무부서 무역국에서는 절차편람 2015-2020 (Handbook of Procedure)의 2.103항에 따라 인도가 맺은 FTA, CEPA, CECA, PTA 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발급당국이 일시적으로 폐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무역산업부는 말레이시아 수출입기업들의 ATIGA를 비롯한 FTA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을 승인할 대책을 도입,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14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Read More](#)

2. 한-인니간 EODES 시행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절차 안내

관세청은 2020.2.1.부터 한-인도네시아간 EODES(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시행으로 양국 세관당국에 수입신고 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C/O) 원본 제출 생략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협정관세 적용절차를 안내하였다. 인니 수출자는 전자 또는 종이서류로 원산지증명서 선택 발급 가능하며 전자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만 C/O 정보가 전자적으로 우리나라로 통보된다.

[Read More](#)

3. 관세청, AEO 인증업체 등 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 발급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AEO 인증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서류심사 없이 원산지 증명서를 24시간 자동 발급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부품 공급업체 재택근무 등으로 증빙서류 구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 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특혜 허용 및 원산지 조사 유예 조치 등에 이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4월 8일 밝혔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QUARANTINE & CERTIFICATION TREND

1. 식품 중 미량 검출 ‘프로피온산’ 천연유래로 인정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 첨가물인 프로피온산이 0.1g/kg 이하로 검출된 경우, 해당 식품을 천연유래 식품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이 14일 행정예고 되었다. 이는 식품 보존 효과가 없고 인체 유해성이 없는 미량의 프로피온산에 대해 천연유래 입증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 규정이다. 그러나 동물성 원료의 경우 식품이 부패 및 변질되는 과정에서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된다.

[Read More](#)

2. 중국산 ‘당근·파’, 미국산 ‘아보카도·맥주’ 안전성 인정 식품서 제외

중국산 ‘당근, 파’와 미국산 ‘아보카도 맥주가’ 식품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여 안전성 인정 식품서 제외 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22일 고시 및 시행하였으며, 개정 규정은 5년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중국산 우엉과 개량맥주, 텍스트린, 물엿 및 맥주(아일랜드, 영국, 중국, 체코, 필리핀), 볶은 커피(말레이시아, 스페인), 연육(인도), 위스키(미국) 등 가공식품 7개 품목을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안전성 인정 식품에 추가했다.

[Read More](#)

3. HACCP 적용 해외제조업소 인증제도 도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기존의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를 폐지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생산, 가공, 유통 및 수입과정과 관련된 각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